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3일,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8.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8.)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9. 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오경의원)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및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 ‘인프라’의 지속적 발전, ‘관광인프라’의 조성 등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1항 및 제48조의12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용규)

-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및 제48조의12(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은 ‘스마트관광산업’과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을 각각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과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프라’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

사전에 따르면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로서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 시설 따위의 산업 기반과 학교, 병원, 상수·하수 처리 따위의 생활 기반을 이르는 표현으로, 국립국어원은 공공언어 개선을 위하여 ‘인프라’에 대한 표준화 용어로 ‘기반시설’을 제시하고 있으며,¹⁾ 법제처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통하여 ‘인프라’를 ‘기반’ 또는 ‘기반시설’로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이 권장하는 우리말 용어인 ‘기반시설’로 순화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의 용어 정비를 통해 국민의 법령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 참고로, 유사한 취지로 외국어인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²⁾과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³⁾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국립국어원 누리집(개선>표준 전문용어, https://www.korean.go.kr/front/imprv/stdnrList.do?mn_id=159&pageIndex=1)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578호)

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579호)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은희)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제2158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규정된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제2158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규정된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함(안 제47조의8제2항제3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법률 제2158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8제2항제3호 중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법률 제2158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법률 제2158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 ----- ----- ----- ----- ----- ----- ----- ----- ----- ----- ----- ----- ----- ----- ----- <u>기반시설을</u> ----- ----- ----- ----- -----	법률 제2158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개정안과 같음)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u>인프라</u> 확충 4. ~ 8.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2. (개정안과 같음) 3. ----- ----- ----- ----- -----<u>기반시설</u> ----- 4. ~ 8. (개정안과 같음)
---	---------------------------------	--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58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8제1항 중 “인프라를”을 “기반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한다.

제48조의12제1항 중 “관광인프라를”을 “관광기반시설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584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법률 제21584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 ----- ----- ----- ----- ----- ----- ----- <u>기본시설을</u> ----- -----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②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3. -----

연구개발·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u>인프라</u> 확충 4. ~ 8. (생략) 제48조의12(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과 기업의 일·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u>관광인프라</u>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u>기반시설</u>----- 4. ~ 8. (현행과 같음) 제48조의12(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① ----- ----- ----- ----- ----- -----<u>관광기반시설을</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